

심사청구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	상호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	주소(거소) 또는 사업장 소재지	(☎) 전자우편(e-mail) :

처분청	조사기관
-----	------

처분통지를 받은 날(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) : 년 월 일

※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(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, 기분,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)

※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

이의신청을 한 날	년 월 일	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(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)	년 월 일
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불복의 이유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)

「국세기본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「국세기본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
(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)

위임장	위임자 (청구인)	(서명 또는 인)			
	사업장 대리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소재지	전자우편
		구분	성명	생년월일	(휴대)전화번호
수행자	세무사 []] 공인회계사 []] 번호사 []] 배우자등 []]				

첨부서류	1. 불복이유서(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) 2.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(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국선대리인 제도 안내

□ 제도개요

-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,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,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,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자격

- 대리인 없이 신청·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,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,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□ 신청절차

-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심사청구서 접수증		(접수번호 호)	
청구인		주 소	
첨부서류 1. 불복이유서() 2.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()		접수자	
		접수일자인	
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 → 전자불복청구)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,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,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			